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319
----------	-----

제출일 : '97. 10. .

제출자 : 파 주 시 장

□ 제정 이유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96. 3. 1 시 승격에 따른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짐에 따른 지방문화 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문화예술공간의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 주요 골자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은 ①공동주택 ②업무시설
③숙박시설 ④판매시설 ⑤위락시설

나. 미술장식품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건물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용도가 ① 근린생활시설
② 의료시설중병원 ③ 업무시설 ④숙박시설 ⑤판매시설 ⑥위락시설
⑦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⑧운수시설중 철도역사

다.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4조에의한 건축물은 5/1000이상
- 공동주택은(연면적10,000㎡) 1/1000이상

라. 미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 이내로 미술위원회 구성하며, 작품의예술성,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작품의공공성, 작품의안정성및보존성, 기타건축물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

과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 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① 시장은 영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하“건축주”라 한다) 에게 법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시장은 시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5조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되 파주시 미술협회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재 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재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1000분의 5이상
2. 공동주택 (인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제7조 (미술위원회 설치)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파주시 미술위원회 (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예술성
2.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안정성 및 보존성
5.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

② 미술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① 미술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파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인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또는 임명된 위원회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개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간사및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 되고 서기는 문화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